

김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03-17
----------	---------

제출년월일 : 2003. 4.

제출자 : 김제시장

1. 개정이유

- 지방자치단체의 결원의 총수범위안에서 초과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는 기한(03. 2. 28)이 도래함에 따라 그기한을 2003. 8. 31까지 연장하는 지방자치단체 정·현원 관리지침에 의하여 본 조례를 개정 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2003년 8월 31일까지 자치단체 결원의 총수범위안에서 종류별·직급별 초과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을 인정하는 경과조치 규정 연장(부칙 제3조제2항)

· 당 초 : 2003. 2. 28

· 연 상 : 2003. 8. 31

· 직종·직급별 불부합 현원 : 총4명

3. 참고사항

- 정원불부합현원관련 지방자치단체 정·현원 관리지침 통보
[도행정 12200 - 396(2003. 2. 18)호]

김제시조례 제 호

김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김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김제시조례 제414호 김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 부칙 제3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의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결원의 총수 범위안에서 종류별·직급별 정원과 불부합하는 현원 4명은 2003년 8월 31일까지 그 초과 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3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부 칙 [김제시조례414호, 02,10,5]</p> <p>제3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생략) ②제1항의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결원의 총수 범위안에서 종류별·직 급별 정원과 불부합하는 <u>현원 24명</u> 은 2003년 2월 28일까지 그 초과현 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p>	<p>부 칙</p> <p>제3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현행과 같음) ②----- ----- -----<u>현원 4명</u> 은 2003년 8월 31일까지 ----- -----.</p>

2003. 2.

地方自治團體 定・現員 管理指針

全 羅 北 道

地方自治團體 定・現員 管理指針

지방자치단체의 결원의 총수범위안에서 초과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는 기한('03. 2. 28)이 도래함에 따라 그 기한을 2003. 8. 31까지 연장 협의하니 자치법규개정 등 시행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I. 根 據

- 대통령령 제16550호 기구정원규정중개정령 부칙 제3조제3항
 - ※ 2003년 2월 28일까지 그 지방자치단체의 결원의 총수범위 안에서 종류별·직급별 초과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그 지방자치단체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보는 경과조치를 규정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2003년 2월 28일까지 종류별·직급별 정원과 현원을 일치시키지 못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 6월의 범위 내에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02. 6. 10공포·시행)

II. 協議內容

- 자치단체별 불임 종류별·직급별 정원과 불부합한 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는 기한을 2003. 8. 31까지 연장협의함(2003. 2. 28 → 2003. 8. 31)
 - ※ 불임 : 불부합현원 기한연장 협의내역
- 자치단체에서는 불임 「불부합현원 기한연장 협의내역」을 자치단체별 협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

Ⅲ. 自治團體가 措置할 事項

① 결원발생시 직종·직급별 불부합현원 우선 해소

- 결원이 발생하였거나 새로운 행정수요로 인하여 정원이 증원된 경우 직종·직급별 불부합 상태를 우선적으로 조정하여 정원과 현원이 일치되도록 노력
- 신규로 증원된 정원에 대해 당해 자치단체에서 직종·직급별 불부합 현원을 해소하고도 신규충원을 해야 할 경우
 - 1차로 불부합 현원이 있는 다른 자치단체에서 전입하여 충원하고
 - 전입희망자가 없을 경우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신규모집 실시

② 결원의 총수범위 내에서만 불부합 현원 인정

- 결원의 총수범위내의 불부합현원에 한하여 '03. 8. 31까지 불부합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는 경과조치를 규정할 수 있음
- 따라서, 불부합현원수만큼 결원을 유지해야 하며, 직종·직급별로 정원과 현원의 불부합 문제를 지속적으로 해소하여 '03. 8. 31에는 정원과 현원이 일치되도록 해야함

③ 조례·규칙개정

- 지방공무원정원조례 개정
 - '03. 8. 31까지 따로 있는 것으로 보는 정원의 총수(불부합현원의 총수)를 명시
 - 조례시행일 : '03. 3. 1
- 지방공무원정원조례시행규칙 개정
 - 조례에서 '03. 8. 31까지 따로 있는 것으로 보는 정원의 총수(불부합현원의 총수)에 대해 계급별 정원을 규정
 - 규칙시행일 : '03. 3. 1

IV. 行政事項

- 자치단체별 정원조례·규칙개정
- 불부합현원 해소 추진상황 보고('03. 3. 25까지, 서식별첨)

불부합현원 기한연장 협의 내역

구 분	합계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정읍시	남원시	김제시	진안군	장수군	임실군
합 계	109	4	27	22	6	36	4	1	6	3
일 반 직	소계	32				25			5	2
	5급	1				1				
	6급	1							1	
	7급	4							2	2
	8급	26					24		2	
	9급									
기 능 직	소계	21	4			2	10	3	1	1
	7급	1				1				
	8급	1					1			
	9급	9				1	4	3		1
	10급	10	4				5		1	
지 도 직	소계	1						1		
	지도관									
	지도사	1						1		
고용직	48		25	18	4		1			
별 정 직	소계	7		2	4		1			
	6급									
	7급	2			2					
	8급	5		2	2		1			
	9급									

조례·규칙상 직종·직급별 정원과 불부합 현원 현황

< 00시·도 >

(2003. 3. 1 현재)

자치 단체 별	자치법규 개정공포 (예정)일		개정 정원규칙상 명시된 불부합 현원												
			합계	일반직						기능직	고용직	연구직 지도직	별정직	기타직	
				소계	4급 이상	5급	6급	7급	8급						9급
합계			0	0	0	0	0	0	0	0	0	0	0	0	0
00시·도	00-00	00-00	0	0											
시군구계			0	0	0	0	0	0	0	0	0	0	0	0	0
1시군구	00-00	00-00	0	0											
2시군구	00-00	00-00	0	0											
3시군구	00-00	00-00	0	0											
4시군구	00-00	00-00	0	0											
5시군구	00-00	00-00	0	0											
6시군구	00-00	00-00	0	0											
7시군구	00-00	00-00	0	0											
8시군구	00-00	00-00	0	0											
9시군구	00-00	00-00	0	0											
10시군구	00-00	00-00	0	0											
11시군구	00-00	00-00	0	0											
12시군구	00-00	00-00	0	0											
13시군구	00-00	00-00	0	0											
14시군구	00-00	00-00	0	0											
15시군구	00-00	00-00	0	0											
16시군구	00-00	00-00	0	0											
17시군구	00-00	00-00	0	0											
18시군구	00-00	00-00	0	0											
19시군구	00-00	00-00	0	0											
20시군구	00-00	00-00	0	0											
21시군구	00-00	00-00	0	0											
22시군구	00-00	00-00	0	0											
23시군구	00-00	00-00	0	0											
24시군구	00-00	00-00	0	0											
25시군구	00-00	00-00	0	0											
26시군구	00-00	00-00	0	0											
27시군구	00-00	00-00	0	0											
28시군구	00-00	00-00	0	0											
29시군구	00-00	00-00	0	0											
30시군구	00-00	00-00	0	0											
31시군구	00-00	00-00	0	0											

●김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1999. 1. 16}
(조례제267호)
전문개정

개정 1999.11.30 조례제309호 2001. 7.30 조례제380호
2000. 6. 7 조례제335호 2002. 4.11 조례제402호
2001. 2.26 조례제365호 2002.10. 5 조례제414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3조 및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
기준등에관한규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김제시(이하 “시”라 한다)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원의 총수) 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942인으로 하며, 다
음 각호와 같다. <개정 02. 10. 5 조례414>

1. 집행기관의 정원 : 922인 <개정 02. 10. 5 조례414>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20인 <개정 99. 11. 30 조례309>

제3조(정원관리기관별·직급별 정원) 본청, 의회사무국, 직속기관, 사업소, 읍·
면·동 등 정원관리기관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정원감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으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인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
으로 본다. 다만, 지방별정직공무원이 초과현원인 경우에는 1999년 12월 31일
까지 그 초과인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 칙 <99. 11. 30 조례30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적용례) 김제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제2조 규
정에 불구하고 2000년 7월 31일까지는 『표 1』을, 2001년 7월 31일까지는 『표
2』를 각각 적용한다.

(추5)

[표 1] 김제시 지방공무원 정원표 <개정 00. 6. 7 조례335>

구 분	정 원
정원의 총수	950인
1. 집행기관의 정원	930인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20인

[표 2] 김제시 지방공무원 정원표 <개정 02. 10. 5 조례414>

구 분	정 원
정원의 총수	974인
1. 집행기관의 정원	954인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20인

제3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부칙 제2조 「표 1」 규정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34인(집행기관의 정원 34인)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표 2」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32인(집행기관의 정원 32인)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1년 7월 31일까지, 제2조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32인(집행기관의 정원 32인)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2년 7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02. 10. 5 조례414>

②제1항의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결원의 총수 범위안에서 종류별·직급별 정원과 불부합하는 현원 24명은 2003년 2월 28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신설 02. 10. 5 조례414]

제4조(직급별정원규정에 관한 경과조치)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조의 규정 및 부칙 제2조 「표 2」의 규정에 대한 정원기관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은 매년 6월 30일까지 정한다.

제5조(한시정원) 제2조제1호 집행기관의 정원중 20인은 200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01. 7. 30 조례380>

부 칙 <00. 6. 7 조례33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01. 2. 26 조례36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01. 7. 30 조례38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02. 4. 11 조례402>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 김제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단서를 삭제한다.

제3조중 제5호를 삭제하고, 제8호 “나관리요원”을 “한센병관리사”로 하며, 제11호와 제12호를 각각 삭제하고, 제14호 “생활체육지도원”을 “생활체육지도사”로 한다.

부 칙 <02. 10. 5 조례4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2년 8월 1일부터 적용한다.